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삼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6. 28.

발의자 : 김삼화 · 김경진 · 김동철
이용호 · 김종회 · 김태흠
황주홍 · 신용현 · 유성엽
김관영 · 김광수 · 이동섭
박주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협약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, 안전관리자의 해임·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

5조 제4항).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안전관리자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<u>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5조(안전관리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-----</u>.</p> <p>1. <u>안전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2. <u>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</u></p>
<p>⑤ ~ ⑧ (생략)</p>	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